

부동산등기시 구비서류

	매도인(등기의무자)	매수인(권리자)
이 전 등 기	1. 인감증명서(용도:매도용) 2통 2.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 3. 토지대장, 건축물관리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 4. 등기권리증 (집문서) 5. 인감도장 지참	1. 주민등록등본1통 2. 도장(막도장)지참
근 저 당 등 기	1. 등기권리증 (집문서) 2. 인감증명서 1통 3. 인감도장 지참 4.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	1. 주민등록등본1통 2. 도장(막도장)지참
전 세 권 설 정 기	1. 등기권리증 (집문서) 2. 인감증명서 1통 3. 인감도장 지참 4.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	1. 주민등록등본1통 2. 도장(막도장)지참
가 등 기	1. 등기권리증 (집문서) 2. 인감증명서 1통 3. 토지대장, 건축물관리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 4. 인감도장 지참 5.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	1. 주민등록등본1통 2. 도장(막도장)지참
각 종 말 소 기	1. 가등기권리증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통 2. 전세권 설정계약서, 도장지참 3. 근저당권 설정계약서, 도장지참	1. 권리자 도장(막도장) 지참
건 물 보 존 기	1. 건축물관리대장 1통 2.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 3. 건축면적 150평 이상은 도급계약서등	

* 이전등기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성명, 주민등록상 주소,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.
 * 토지이전등기신청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검토 후 “개발제한구역”은 토지거래허가